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1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최기찬, 강석주, 고광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현기, 김형재, 민병주,
박 석, 박승진, 서상열,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왕정순, 유만희,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정준호,
최재란, 홍국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으로서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및 사업 참여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에 대해 총회 전자투표 시행과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지정한 사업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개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모아주택 사업의 전자투표 시행 및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양한 신기술을 사업에 접목, 신속 정확한 주민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전자투표 시행 비용과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5.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6.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시 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 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 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③ (생 략)</p>	<p>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 른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p> <p>5.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p> <p>6.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 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 권 행사 비용</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전자 투표 비용, 관련업체,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자동의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2025.3.30.)되어 해당자료를 참고로 제시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계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진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참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입배경)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 서면동의 전자동의 기간과 비용 비교 >

	서면동의	전자동의
기간	3개월(취합), 2개월(검증)	2주(취합·검증)
비용	1~1.5억원	약 450만원~600만원

* 선도지구 3~4천 세대 기준

- (시스템 운영)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 * 노후계획도시법 제3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운영 중(도시정비플랫폼 내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 >

